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63

발의연월일: 2021. 7. 6.

발 의 자: 장철민·김민철·김진표

임오경 · 이상헌 · 오영환

안호영 · 강민정 · 정청래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호 및 제71조제6호).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위조 또는 유출"을 "위조, 유출 또는 이용"으로 한다. 제71조제6호 중 "위조 또는 유출"을 "위조, 유출 또는 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	제59조(금지행위)
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	3
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	
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u>위조 또는 유출</u> 하는 행	<u>위조, 유출 또는 이용</u> -
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	6
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u>위조 또는 유출</u> 한	<u>위조, 유출 또는</u>
자	<u>o </u>